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0년 상반기 국제출원 소식지

2020. 6

Contents

- I.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소식
- II.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소식
- III. 헤이그(Hague) 국제출원 소식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소식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

1. 2019년 PCT 국제출원 현황
2.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보
3. PCT 규칙 개정
4. PCT 규칙 20.8(a의2) 및 [b의2]에 따른
상충 사실의 통지
5.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6.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7. 유럽 연합 탈퇴 후 영국에 관한 내용
8. PATENTSCOPE 소식
9. PCT 시스템 가입국

1 2019년 PCT 국제출원 현황

□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 PCT 국제출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019년에는 약 265,800건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5.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원 건수	218,000	233,000	243,500	252,776	265,800
증가율(%)	1.7	7.3	4.5	3.9	5.1

□ 국가별 PCT 국제출원 현황

- 아시아 지역 출원이 전체 출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19,085건(출원인 국적 기준)으로 7.2%를 점유하며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위 : 건,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출원 건수	58,990	57,840	52,660	19,353	19,085

□ 다출원 기업 현황

- 최다 출원인* 부분에서는 '화웨이'가 1위를 차지하였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3위, 10위에 올랐습니다.

* 2019년에 해당 출원인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을 기준으로 함

(단위 : 건)

순위	기업명	출원 건수	순위	기업명	출원 건수
1	화웨이	4,411	6	BOE	1,864
2	미쯔비시전기	2,661	7	에릭슨	1,698
3	삼성전자	2,334	8	핑안 기술	1,691
4	퀄컴	2,127	9	보쉬	1,687
5	광동 모바일	1,927	10	LG 전자	1,646

2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보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에서의 종이 서류 송부 및 접수에 관한 정보

- 국제사무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제사무국(RO/IB 포함)이 발행하는 PCT 서식과 서한 등 문서의 서면 송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메일로만 문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개별 출원과 관련된 PCT 관련 문서는 ePCT 또는 PATENTSCOPE (국제공개 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이메일 주소를 아직 국제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은 PCT 사용자께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당 정보를 긴급히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i) 미결 국제출원 중 한 건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ePCT상에서 직접 입력(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해당 접근권한이 있는 경우)
 - (ii)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
 - (iii) pct.eservices@wipo.int 또는 pct.infoline@wipo.int로 이메일 전송
 - (iv) WIPO (PCT) 문의하기 페이지를 이용
 - 상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무국과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ePC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 및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제출 및 처리 관련 업무 지속

- 2020년 3월 17일부터 WIPO는 직원 대다수의 원격근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제출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지속합니다.
 -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4.html

□ 유용한 도움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시나리오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안하겠습니다.

○ 처리할 특정 업무가 있는 **수리관청 또는 기타 PCT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이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 **PCT 규칙 80.5(i):**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SISA),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지정/선택 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관청 또는 정부 간 기구가 특정일에 예외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해당 날짜에 만료되는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PCT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른 기한을 포함한) 모든 PCT 기한은 PCT 규칙 80.5(i)에 따라, 해당 관청이나 기관이 열리는 날인, 그 익일까지 연장됩니다.

- PCT 규칙 80.5(i)은 PCT에 따른 모든 기한에 적용되며, 파리협약의 상응 규정은 우선권기간(priority period)에 적용됩니다(아래 파리협약 제4조(C)(3) 참고).

- **PCT 제8조 및 파리협약 제4조(C)(3):** (신규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출원을 출원하지 못한 경우, 파리협약 제4조(C)(3)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2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에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관청이 휴무일인 경우가 아니라 관련 수리관청이 휴무일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 대리인이나 출원인의 직장이 임시 휴무인 경우

- **PCT 규칙 26의2.3 및 49의3.2:** 12개월의 우선권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우선권 회복"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12개월의 파리협약의 우선권기간을 놓친 출원인에게 우선권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PCT 규칙 26의2.3 및 49의3.2 참고).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은 수리관청이나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이 건별로 내리는데, 특히 출원인이 "적절한 주의(due care)" 기준이 충족된다는 점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세한 해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관청은 해당 규칙들에 대한 상충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 **PCT 규칙 82의4:**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용 가능한 기한을 놓친 경우, 이런 상황에서 PCT 규칙 82의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해당 규칙에 기재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허용합니다. 해당 규칙의 혜택을 받으려면 출원인은 그러한 취지의 증거를 해당 기한이 만료된 지 6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제시하고, 그때까지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해당 규칙에 따라 기한 충족 실패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관청,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이 내립니다. 단, 해당 규칙은 우선권기간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PCT 규칙 49.6:** PCT 출원인이 위에 기재된 이유로 해당 기한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PCT 규칙 49.6에 따라 해당 지정관청에서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정관청이 건별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며, 해당 관청이 적절한 주의(due care)나 비고의성(unintentionality)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관청은 해당 규칙에 대한 상충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 놓친 기한이 지정 또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서 처리될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해결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의

각 국내편을 보시거나 해당 국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수수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PCT 규칙 80.5(ii) 및 80.6, 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사무국, 코로나19 팬데믹이 PCT 규정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

- 국제사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82의4.1*의 면책 사항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위 규칙은 불가항력의 사유(전쟁, 혁명, 시민소요, 파업, 천재지변,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해 PCT 기한(서류 제출 및/또는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을 지키지 못한 책임의 면제에 대해 규정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취하간주 통지서(서식 PCT/RO/117)의 발급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WIPO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수리관청이 이와 같은 관행을 채택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아래의 조치에 대하여도 권고**하는 제안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어도 한 달(이 기간은 추가로 연장 가능)은 더, 위 언급된 통지서를 만료 시점이 2개월 이상 지난 기한과 관련해서만 발급할 것

- 수리관청이 PCT 규칙 16의2.2에 따른 가산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

** 수리관청으로서의 한국특허청은 위 세 가지 WIPO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여 절차를 진행 중임

□ 이례적 IP 관청 휴무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포함]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상황 때문에, 국제사무국은 많은 PCT 관청들이 이례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관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날짜 중 만료되는 경우, 해당 기한이 연장되어 해당 관청이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다시 열리

는 날인,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각 관청의 이례적 휴무 여부는 아래 "IPO 휴무일"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 상기 페이지에는 국제사무국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휴무일만 나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청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업데이트 안내 [PCT 시스템]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사무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안내하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wipo.int/pct/ko/covid_19/covid_update.html

3 PCT 규칙 개정

□ PCT 규칙 일부 개정

○ 2019년 PCT 총회에서 개정된 아래 PCT 규칙들이 2020.7.1.부터 발효됩니다.

- 전자통신 수단의 제공에 문제가 있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책임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규칙 82의4)

- 국제단계에서 규칙 4.11의 표시를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규칙 26의4)

- 잘못 출원된 요소 또는 부분(erroneously filed elements or parts) (규칙 4, 12, 20(20.5의2 신설), 40의2, 48, 51의2, 55, 82의3)

· 출원일을 연기하면서 보정(correction)하거나,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인용에 의한 보완(incorporation by reference)

· 보정이나 보완된 사항이 국제조사 시작 후 전달된 경우 국제조사 기관에서 추가 수수료 부여 가능

- 한 관청이 다른 관청을 위해 수령하는 수수료를 국제사무국(IB)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규칙 15, 16, 57, 96)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서류 제공 및 국제사무국의 해당 자료 제공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규칙 71, 94)

4 PCT 규칙 20.8(a의2) 및 (b의2)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

□ PCT 규칙 20.8(a의2)에 따른 통지

-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래 관청들은 새로운 PCT 규칙 20.5의2(a)(ii) 및 20.5의2(d)가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또는 유효한 상태인 PCT 규칙 20.8(a)에 따른 통지를 근거로 해당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L 칠레 CU 쿠바 CZ 체코 DE 독일 ES 스페인 FR 프랑스
ID 인도네시아 IT 이탈리아 KR 대한민국 MX 멕시코

□ PCT 규칙 20.8(b의2)에 따른 통지

-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래 관청들은 새로운 PCT 규칙 20.5의2(a)(ii) 및 20.5의2(d)가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거나, 또는 유효한 상태인 PCT 규칙 20.8(b)에 따른 통지를 근거로 해당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L 칠레 CN 중국 CU 쿠바 CZ 체코 DE 독일 ES 스페인
ID 인도네시아 KR 대한민국 MX 멕시코 TR 터키

5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서식 개정(팩스서비스 제한 반영)

- 국제사무국의 팩스 서비스 제한 결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의 PCT 관련 서식에서 팩스번호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PCT 출원인이 ePCT(<https://pct.wipo.int>)를 통해 국제사무국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불가피 ePCT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한국어 제공: PCT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방법 안내

-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는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한 FAQ 자료가 아래와 같이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 www.wipo.int/pct/ko/faqs/amendments_19_and_34.html

6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 대한민국 특허청

- 2019년 7월 1일부터 협력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대한민국 특허청은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에 주심기관으로서 접수되는 국제 출원이 약속된 한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추가 시범사업 참여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 PCT 국제출원시 ISA/KR을 선택한 경우, 시범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

-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서는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에 관해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는, 유럽 연합과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유럽 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른 38개 체약국이 속한 유럽특허기구 내 영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특허협약과 PCT에 따른 절차들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서 서식(서식PCT/RO/101) 내 유럽(EP)의 지정에는 앞으로도 영국(GB)이 포함됩니다.

□ 영국의 대리인 및 법률 전문가의 지위

-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서는 유럽특허청에서의 영국의 대리인 및 법률 전문가의 지위에 관해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유럽 특허청에서의 대리(representation)에 관한 원칙 또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특히, 유럽특허협약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유럽 특허청 대리인 목록에 등재된 영국의 유럽변리사들은,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수립된 절차가 시행될 수 있는 국가들, 즉, 독일과 네덜란드 중 어느 곳에서도 업무 허가증이 없어도 구두 변론을 포함한 유럽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할 충분한 자격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 자격을 갖추고 영국에 영업소를 둔, 영국에서 특허 관련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유럽 특허청에서의 절차

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지사항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html

8 PATENTSCOPE 소식

□ PCT 패밀리 특허

- 이제 PATENTSCOPE에서 PCT 출원의 패밀리 특허 관련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구체화(Refine Options)" 아래 새로 생긴 옵션을 선택하면 같은 패밀리에 속한 특허들을 보실 수 있고, "PCT 패밀리(PCT family)"라는 표시가 해당 문서에 나타납니다.
 - 해당 패밀리를 대표하는 주요 출원으로 간주되는 PCT 출원
 - PCT 선출원을 명시한 국내출원
 - 국내단계 진입 기록
 - 해당 PCT 출원의 고유한 최초의 공개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priority application)

□ 새로운 선진특허분류(CPC) 검색 필드

- PATENTSCOPE에서는 선진특허분류(CPC2) 검색 필드가 새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PATENTSCOPE에는 4천만 건이 넘는 개별 출원에 해당되는 2억 개가 넘는 CPC 코드가 등재되어 있으며, PCT 출원의 99%가 이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 미국 국립보건원(NIH) 데이터베이스에 검색 가능한 화학식 수백만 개 제공

- WIPO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무료 화학 데이터베이스인 PubChem에 1,600만 개의 화학식을 제공하여 유효화합물(hit compound)들이 추가 스크리닝에 있어 우선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 PubChem에서 WIPO의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화학정보학, 화학생물학, 의약화학, 신약 개발(drug discovery) 등의 여러 연구 분야에 대해 핵심 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InfoChem과의 협업을 통해 PATENTSCOPE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화합물 검색을 지원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0/news_0002.html

9

PCT 시스템 가입국

□ PCT 가입 계약국 현황

○ 2020. 6월 말 현재,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계약국은 153개국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KZ	카자흐스탄(Kazakhstan)
AG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LA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L	알바니아(Albania)	LC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O	앙골라(Angola)	LK	스리랑카(Sri Lanka)
AT	오스트리아(Austria)	LR	라이베리아(Liberia)
AU	호주(Australia)	LS	레소토(Lesotho)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T	리투아니아(Lithuan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BB	바베이도스(Barbados)	LV	라트비아(Latvia)
BE	벨기에(Belgium)	LY	리비아(Libya)
BF	브루키나파소(Burkina Faso)	MA	모로코(Morocco)
BG	불가리아(Bulgaria)	MC	모나코(Monaco)
BH	바레인(Bahrain)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J	베냉(Benin)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BR	브라질(Brazil)	MK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W	보츠와나(Botswana)	ML	말리(Mali)
BY	벨라루스(Belarus)	MN	몽골(Mongolia)
BZ	벨리즈(Belize)	MR	모리타니(Mauritania)
CA	캐나다(Canada)	MT	몰타(Malta)
CF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MW	말라위(Malawi)

CG	콩고(Congo)	MX	멕시코(Mexico)
CH	스위스(Switzerland)	MY	말라위(Malawi)
CI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MZ	모잠비크(Mozambique)
CL	칠레(Chile)	NA	나미비아(Namibia)
CM	카메룬(Cameroon)	NE	니제르(Niger)
CN	중국(China)	NG	나이지리아(Nigeria)
CO	콜롬비아(Colombia)	NI	니카라과(Nicaragua)
CR	코스타리카(Costa Ric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U	쿠바(Cuba)	NO	노르웨이(Norway)
CY	키프로스(Cyprus)	NZ	뉴질랜드(New Zealand)
CZ	체코(Czechia)	OM	오만(Oman)
DE	독일(Germany)	PA	파나마(Panama)
DJ	지부티(Djibouti)	PE	페루(Peru)
DK	덴마크(Denmark)	PG	파푸아뉴기니
DM	도미니카(Dominica)	PH	필리핀(Philippines)
DO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PL	폴란드(Poland)
DZ	알제리(Algeria)	PT	포르투갈(Portugal)
EC	에콰도르(Ecuador)	QA	카타르(Qatar)
EE	에스토니아(Estonia)	RO	루마니아(Romania)
EG	이집트(Egypt)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n Federation)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GA	가봉(Gabon)	SC	세이셸(Seychelles)
GB	영국(United Kingdom)	SD	수단(Sudan)
GD	그레나다(Grenada)	SE	스웨덴(Sweden)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포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M	감비아(Gambia)	SK	슬로바키아(Slovakia)
GN	기니(Guinea)	S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GQ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SM	산마리노(San Marino)
GR	그리스(Greece)	SN	세네갈(Senegal)
GT	과테말라(Guatemal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GW	기니비사우(Guinea Bissau)	SV	엘살바도르(El Salvador)
HN	온두라스(Honduras)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HR	크로아티아(Croatia)	SZ	에스와티니(Eswatini)
HU	헝가리(Hungary)	TD	차드(Chad)
ID	인도네시아(Indonesia)	TG	토고(Togo)
IE	아일랜드(Ireland)	TH	태국(Thailand)
IL	이스라엘(Israel)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N	인도(India)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R	이란(Iran)	TN	튀니지(Tunisia)
IS	아이슬란드(Iceland)	TR	터키(Turkey)
IT	이탈리아(Italy)	TT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JO	요르단(Jordan)	TZ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JP	일본(Japan)	UA	우크라이나(Ukraine)
KE	케냐(Kenya)	UG	우간다(Ugand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H	캄보디아(Cambodia)	UZ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M	코모로(Comoros)	VC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KN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VN	베트남(Viet Nam)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S	사모아(Samoa)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Z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KW	쿠웨이트(Kuwait)	ZM	잠비아(Zambia)
		ZW	짐바브웨(Zimbabwe)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소식

마드리드
(Madrid)
국제출원

1. 2019 마드리드 국제출원 통계
2.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WIPO 공지사항
3. 마드리드 프로토콜 및 규칙 개정
4. 회원국 변동 사항
5. 마드리드 사용자 편의 서비스 안내
6. 마드리드 시스템 계약당사자 현황

1

2019 마드리드 국제출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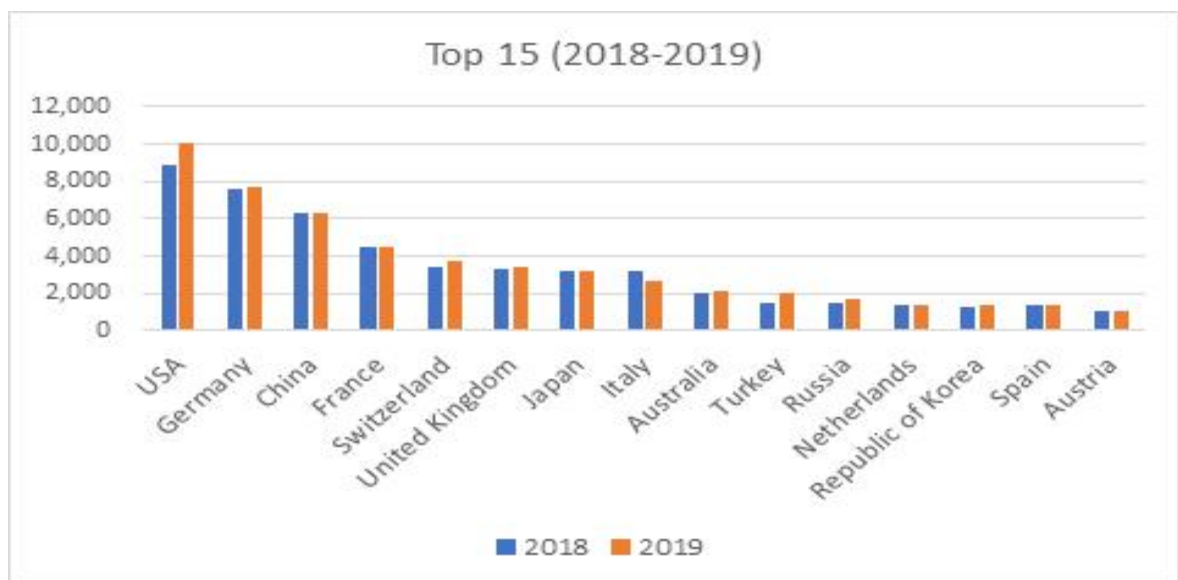
□ 전 세계 마드리드 출원 현황

- 2019년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총 64,400건 출원되어 전년대비 5.2% 성장하였습니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원 건수	47,885	48,910	52,550	56,200	61,200	64,400

□ 국가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

- 전년과 동일하게 미국이 10,087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독일(7,700), 중국(6,339), 프랑스(4,437), 스위스(3,729) 순으로 출원하였습니다. 상위 15개 본국관청의 출원 성장률은 터키(37.8%), 러시아(15.6%), 미국(14.3%), 스위스(10.2%) 성장한 반면, 이탈리아는 (16%) 감소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1,391건으로, 전년(1,305건)대비 6.6%의 성장을 보여, 지난해 14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다출원 기업 및 다출원 분야

- 다출원 기업 순위로는 로레알(189건)이 1위를 차지했고, 노바티스(135건), 화웨이(131건)가 그 뒤를 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52건으로 17위, 삼성전자는 50건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 분야별로는 1위는 컴퓨터 및 전자(10.1%), 2위는 사업(8.3%), 3위는 기술서비스(6.7%)가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분류 중 의약 및 의료 목적의 제재(12.4%)와 교육/연수/오락/스포츠 및 문화관련 서비스가 9.6% 성장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5.html)

2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WIPO 공지 사항

□ 국제사무국에 대한 제출기한 경과 구제

- 코로나 바이러스 조치로 봉쇄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 및 전자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여 마드리드 프로토콜 규칙(이하 마드리드 규칙) Rule 5(1), 5(2) 및 5(3)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 우편·송달 및 전자통신 서비스의 재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 등을 제출하되, 해당 기한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해야 하며, 관련 증명 서류(공식발표 또는 공인의사가 발급한 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계속

- 마드리드 규칙 Rule 11(2), 11(3), 20*bis*(2), 24(5)(b), 26(2), 34(3)(c)(iii) 및 39(1)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도
 - 해당 기한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식서식 MM20을 국제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 사후지정, 수수료납부 등 관련 절차의 계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당사국 관청의 폐쇄

- 폐쇄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폐쇄 사실과 폐쇄기간, 재개시일에 대해 통보하되,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연한 수단과 구제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 경우, 마드리드 규칙 Rule 4(4)에 따라, 관청의 폐쇄일에 만료된 건은 관청의 재개시일의 첫 날에 만료되며,
 - 해당 관청과 관련된 모든 기한(예를 들어, 국제사무국에 가거절 통지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청의 통지에 대응하는 기한(예: 가거절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한)도 연장됩니다.
- 국제사무국은 이와 관련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를 Madrid Member Profiles Database에 제공할 것입니다.

□ 우편 · 송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조치

- 국제사무국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전자적 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할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Contact Madrid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메일 정보가 없는 경우 국제출원 또는 기타 신청서의 하자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으며, 이메일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은 온라인 수령이 불가능한 곳에는 우편통지를 지속할 것입니다. 국제사무국은 출원인/권리자 및 대리인이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Madrid Portfolio Manager의 업로드 기능과 Contact Madrid를 이용하고, e-Payment(수수료 납부), e-Renewal(갱신신청), e-Subsequent designation(사후지정신청)와 같은 전자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또한, Madrid Monitor(마드리드 국제등록 검색서비스), 마드리드 회원국 관련 정보(Madrid Member Profiles Database) 및 E-Notifications(하자통지서, 가거절통지서 등을 포함한 국제 출원·등록에 관한 통지서 사본(PDF)을 이메일로 수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조치 관련 상세 정보는**

https://www.wipo.int/madrid/en/news/2020/news_0009.html 참조.

3 마드리드 프로토콜 및 규칙 개정

□ 마드리드 공통규칙이 의정서 규칙으로 변경 - '20.2.1. 발효

- 마드리드 공통규칙에서 의정서 규칙으로 변경
 - 기존의 마드리드 공통규칙이 의정서 규칙으로 개명("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에서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통규칙이 아닌 유일한 규칙이 되었습니다. (2018.10월 마드리드 총회(Madrid Assembly) 50회 회기에서 채택)
 - 상기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Section 5에서 "paper"와 Section 12(d)에서 "telefacsimile"을 삭제하고 Section 7에 "typed"를 추가하였습니다. 수수료 규정(Schedule of Fees)도 개정되어 2020.2.1일 발효되었습니다. 단, 수수료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 2015.10.31일 이후 프로토콜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유일하게 운영되는 조약이 되어 협정(Agreement)에 예속되는 국제출원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2016.10.11일 총회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단일제도 (one-treaty system)로 만들기 위해 마드리드 협정 제14(1)조와 14(2)조를 동결시켰습니다.

□ 국제등록 갱신 절차 간소화 – 규칙(Rule) 30의 개정

- 2020.2.1일부터 국제등록은 지정국과 관련해 감축(limitation), 일부 무효(partial invalidation) 또는 일부 취소(partial cancellation)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갱신됩니다.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갱신수수료가 Rule 18ter(final or further decision)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에 등록결정된 분류의 개수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 일부 등록결정된 국제등록과 관련해 보호대상이 아닌 분류에 대해서는 개별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갱신신청서(MM11)의 항목 4와 E-Renewal의 해당 option이 삭제되었습니다.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지정국이 Rule 18ter에 따른 추가 결정(further statement)을 통해 보호 대상 상품·서비스를 통보하는 경우, 그 지정국과 관련한 차기 갱신료는 추가 결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정국에서 등록결정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Rule 34(6)(a)에 따라 이미 납부된 갱신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권리자는 Rule 18ter에 따른 기술서에서 모든 상품·서비스이 거절된 지정국에 대해서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Rule 30(2)(b)의 개정으로 국제등록이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지정국에서 갱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개별수수료 선언국으로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거절결정한 지정국에 대한 갱신료는 감축, 일부 무효 또는 일부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상품·서비스의 분류 개수를 기준으로 갱신료가 계산됩니다.

☞ 상기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1.pdf 를 참조하세요.

4

회원국 변동 사항

□ 브렉시트 협정(Brexit Agreement)에 따른 영향

-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탈퇴 협정은 2020.2.1~12.31일 까지의 전환(transition period)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은 이 전환기간 동안 EU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에 대해 영국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지속되며, 영국 국적 및 영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EU관청을 본국관청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 영국은 이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EU에서 상표등록을 획득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이 과도기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상표의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방안이 통보되는 대로 공지할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2.pdf

□ 불가리아 – Rule 27bis(6) 관련 통보 철회

- 불가리아 특허청은 규칙 Rules 27bis(6)에 따른 기존의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17일부터 불가리아 특허청은 Rule 27bis(1)에 따른 국제등록 분할신청서를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개별국 상황 - '20.6.11일 기준

○ 아래 목록의 지정계약당사자는 국제사무국에 해당 기간 동안 대민 서비스 업무의 중단 및 재개일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 마드리드 규칙 Rule 4(4)에 따라, 해당 기간에 만료된 마드리드 관련 대상 건들은 해당 관청의 업무 재개일의 첫 날에 만료됩니다.

국가	폐쇄기간	변경만료일	업무 재개일 및 지원서비스
이탈리아	3.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전화 서비스 제공 2. 23 ~ 5. 15일까지 행정처리가 보류된 건들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통보함
스페인	3. 14 ~		
필리핀	3. 16 ~ 5. 25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서비스 지원 3. 16 ~ 6. 30일 간에 기한이 도래한 서류, 중간절차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 기한 연장 중재 관련 심리(hearings)를 포함한 심리 일정은 '20.5.25일까지 중단
그리스	3. 16 ~		
콜롬비아	3. 17 ~ 3. 31	4. 1	
튀니지	3. 22 ~		
마다가스카	3. 23 ~		
인도	3. 23 ~ 5. 3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기간의 연장 가능
멕시코	3. 27 ~ 4. 19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24 ~ 4. 19일까지 행정처리가 보류된 건들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통보함
슬로베니아	3.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전화상 서비스 운영 비상조치의 연장 여부는 늦어도 7. 1일까지 공지 예정
몰도바	3. 30 ~ 4. 3	4. 6	5. 4일 재개
베트남	3. 30. ~ 5. 4	5. 5	5. 5일 재개
앤티가 바부다	3. 31 ~		
아제르바이잔	3. 31 ~ 5. 30	5. 31	5. 31일 재개
쿠바	4. 14 ~		
시리아	4. 16 ~		6. 1일 재개

☞ 코로나19 관련한 업데이트 사항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wipo.int/newsletters-archive/en/madrid_notices.html

○ 아래 지정체약당사자는 민원 관련 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습니다.

국가	조치 내용
미국	• 3. 27일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따라, 상표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한의 연장
오스트리아	• 3. 16일부터 상표 관련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이 연장됨
아프리카 지식 재산기구(OAPI)	• 5. 1 ~ 5.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건들의 기한일이 7. 15일까지 연장됨

○ 각 지정체약당사자의 공지 내용 및 추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국가	참조 사이트
콜롬비아	https://www.sic.gov.co/
몰도바	http://www.agepi.gov.md/en 또는 http://agepi.gov.md/en/news/state-agency-intellectual-property-resumes-its-activity-monday-may-4-2020 를
이탈리아	https://uibm.mise.gov.it/index.php/en/
멕시코	https://www.gob.mx/impi/
튀니지	http://www.innorpi.tn/
마다가스카	http://www.omapi.mg/
인도	http://www.ipindia.nic.in/ 또는 http://www.ipindia.nic.in/trade-marks.htm .
앤티가 바부다	https://abipco.gov.ag/
그리스	http://www.mindev.gov.gr/
베트남	http://www.noip.gov.vn/en/web/english/home
스페인	https://www.oepm.es/es/index.html
아제르바이잔	http://copat.gov.az/
쿠바	http://www.ocpi.cu/
미국	https://www.uspto.gov/ 또는 https://www.uspto.gov/coronavirus
오스트리아	https://www.patentamt.at
필리핀	https://www.ipophil.gov.ph/ 또는 https://drive.google.com/file/d/1zE4qJtFVK8DwNibMHW-ceT4LK5m2TXtt/view
슬로베니아	http://www.uil-sipo.si/uil/ 또는 http://www.uil-sipo.si/uil/urad/o-uradu/novice/elektronske-novice/clanki/poslovanje-urada-v-casu-ukrepov-proti-siritvi-covid-19/
시리아	http://www.dcip.gov.sy/ 참조, 또는 intreg@dcip.gov.sy 로 연락
아프리카 지식 재산기구(OAPI)	http://www.oapi.int/index.php/fr/ 또는 http://www.oapi.int/index.php/fr/component/k2/item/536-les-delais-de-procedures-proroges-jusqu-au-15-juillet-2020

□ 개별 수수료 변동 - 국내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근거

회원국	구분	변경 수수료 (단위 : CHF)		발효일
		최초 1개 분류	추가 분류 (매 분류 마다)	
라오스	출원 및 사후지정	123	88	'20. 3. 7.
	갱신	123	88	
이스라엘	출원 및 사후지정	469	352	'20. 3. 23.
	갱신	836	706	
튀니지	출원 및 사후지정	207	41	'20. 4. 27.
	갱신	270	62	
잠비아	출원 및 사후지정	98	79	'20. 4. 20.
	갱신	328	263	
시리아	출원 및 사후지정		335	'20. 5. 8.
	갱신		335	
호주	출원 및 사후지정		222	'20. 6. 19.
	갱신		254	
한국	출원 및 사후지정		224	'20. 6. 19.
	갱신		256	
노르웨이	출원 및 사후지정 (일반·단체 표장)	216 (최초 3개 분류)	61	'20. 6. 29.
	갱신 (일반·단체 표장)	244 (최초 3개 분류)	94	
스웨덴	출원 및 사후지정	226	89	'20. 6. 29.
	갱신	226	89	

☞ 개별국 수수료 현황은 [WIPO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5 마드리드 사용자 편의 서비스 안내

□ 'How-to' 비디오 자료 활용

- WIPO는 2019년부터 'How-to' 시리즈 비디오로 현재까지 감축(limitation), 포기(renunciation), 취소(cancellation) 및 명의변경(ownership change)에 관한 교육자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Madrid Monitor 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비디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은 [Madrid 'How-to' video](#)를 참조하세요.

□ Madrid webinars

- WIPO는 2020년에도 마드리드 시스템과 관련해 웹세미나(Webinars)를 주제와 언어를 달리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매달 말에 무료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제도 변경, 사후지정, 검색 등에 관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의 자료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모든 자료 확인 및 신청은 [Madrid System Webinars](#) 를 참조하세요.

□ 마드리드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해 스위스 우편송달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WIPO는 이후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아래 서류에 대해 전자버전(PDF)만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것입니다.
 - 국제등록 및 갱신 인증서(certified copies of certificates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renewal), 증명서(attestations) 및 상세 인증사본(detailed certified extracts)
- 상기 증명서 등의 서면 사본은 서비스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송달할 예정입니다.
- 이후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단순 인증서사본 발급(issuance of simple certified extracts), 공증(legalization of documents) 및 긴급서비스(expedited services)는 중단됩니다.

- 2011. 1. 1일 이후의 국제등록에 대해, 해당 국제등록의 권리자 및 대리인은 Madrid Portfolio Manager(<https://www.wipo.int/madrid/en/services/>)를 통해 국제등록 및 갱신 인증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12.pdf

6 마드리드 시스템 계약당사자 현황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계약당사자 현황

- 2020. 6월 말 현재 마드리드의정서 계약당사자는 106개국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F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LA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G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L	알바니아(Albania)	LR	라이베리아(Liber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S	레소토(Lesotho)
AT	오스트리아(Austr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U	호주(Australi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A	모로코(Morocco)
BE	벨기에(Belgium)	MC	모나코(Monaco)
BG	불가리아(Bulgaria)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H	바레인(Bahrain)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BR	브라질(Brazil)	MK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T	부탄(Bhutan)	MN	몽골(Mongolia)
BW	보츠와나(Botswana)	MW	말라위(Malawi)
BY	벨라루스(Belarus)	MX	멕시코(Mexico)
CA	캐나다(Canada)	MY	말레이시아(Malaysia)
CH	스위스(Switzerland)	MZ	모잠비크(Mozambique)
CN	중국(China)	NA	나미비아(Namibia)
CO	콜롬비아(Colombi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U	쿠바(Cuba)	NO	노르웨이(Norway)
CY	키프로스(Cyprus)	NZ	뉴질랜드(New Zealand)
CZ	체코(Czech Republic)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DE	독일(Germany)	OM	오만(Oman)
DK	덴마크(Denmark)	PH	필리핀(Philippines)
DZ	알제리(Algeria)	PL	폴란드(Poland)
EE	에스토니아(Estonia)	PT	포르투간(Portugal)
EG	이집트(Egypt)	RO	루마니아(Romania)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D	수단(Sudan)
GB	영국(United Kingdom)	SE	스웨덴(Sweden)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M	감비아(Gambia)	SK	슬로바키아(Slovakia)
GR	그리스(Greece)	S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HR	크로아티아(Croatia)	SM	산마리노(San Marino)
HU	헝가리(Hungary)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ID	인도네시아(Indonesia)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IE	아일랜드(Ireland)	SZ	에스와티니(Eswatini)
IL	이스라엘(Israel)	TH	태국(Thailand)
IN	인도(India)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R	이란(Iran)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S	아이슬란드(Iceland)	TN	튀니지(Tunisia)
IT	이탈리아(Italy)	TR	터키(Turkey)
JP	일본(Japan)	UA	우크라이나(Ukraine)
KE	케냐(Keny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Z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H	캄보디아(Cambodia)	WS	사모아(Samoa)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N	베트남(Viet Nam)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ZM	잠비아(Zambia)
KZ	카자흐스탄(Kazakhstan)	ZW	짐바브웨(Zimbabwe)

- 유럽연합(EM),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지정은 각 28개, 17개 국가를 포함

헤이그(Hague) 국제출원 소식

헤이그
(Hague)
국제출원

1. 2019년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현황
2.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WIPO 공지사항
3. 헤이그 신규 회원국 및 선언사항
4. 회원국 변동사항
5. 국제사무국 하자통지 사례
6. 헤이그협정 체약국 현황

1

2019년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현황

□ 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 2019년 헤이그 국제출원은 총 5,886건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 헤이그 국제출원은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로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개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데, 헤이그를 통한 디자인 출원 수는 21,807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원서 기준	4,111	5,562	5,213	5,429	5,886
디자인 수 기준	16,435	18,716	19,429	19,344	21,807

□ 국가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 국가별 순위를 보면 디자인 수 기준으로 독일이 4,487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736건으로 2위를 기록하며 18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독일	대한민국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디자인 건수	4,487	2,736	2,178	1,994	1,376

□ 헤이그 국제출원 지정국 현황

- 지정 계약국 기준으로는 유럽연합, 스위스, 터키 순으로 많이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0위
국가	유럽연합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대한민국
디자인 수	16,339	9,578	5,888	5,554	4,361	3,857	2,729

□ 다출원 기업 및 다출원 지정상품

- 기업별로는, 다출원 1위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929건*)가 차지했으며, 2위는 네델란드의 Fonkel Meubel-Marketing B.V.(859건), 3위는 LG전자(598건)이며, 4위는 독일의 Volkswagen AG(536건), 5위는 미국 기업 Procter & Gamble CO.(41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디자인 수 기준(number of designs contained in published registrations)

- 디자인 분야별로는 통신장비(13.6%), 가구(10.1%), 교통수단(9.4%), 포장·용기(6.4%), 조명(6.2%) 부분의 출원이 많았습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WIPO 공지사항**

□ 국제사무국의 우편통신 서비스 중단

- 국제사무국은 공공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20.3.30.일자로 종이기반의 우편 통신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 국제출원, 출원인·대리인 변경신고서 등을 통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수신자에게 각종 통지를 발송합니다.
 - 따라서 무엇보다 e-mail 주소를 제공할 것과, e-mail 주소 제공이 어려운 경우 Contact Hague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해당 서류·신청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또한 국제사무국의 전자서비스(eHague(헤이그 전자출원), ePay(수수료 납부), eRenewal(갱신신청))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우편·전자통신 장애에 따른 기한경과 조치

- 헤이그 공통규칙 제5조에 따라, 우편·전자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 해당서비스의 재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그 통지를 전송하며
- 해당 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 서류(공식 발표 또는 공인의사의 증명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기한경과에 대한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

□ **체약국 관청의 폐쇄에 따른 기한경과 조치**

- 헤이그 공통규칙 제5조에 따라, 유행병으로 일정기간동안 체약국 관청의 업무가 폐쇄하여 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 폐쇄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폐쇄 사실과 폐쇄기간, 재개시일에 대해 통보하며,
 - 이 경우 그 관청과 관련된 모든 기한은, 관청의 폐쇄일에 만료된 것은 관청의 개시일에 만료되며, 관청의 통지에 대응하는 기한(예: 가거절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포함하여 관청과 관련된 모든 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조치 관련 상세 정보는**

https://www.wipo.int/madrid/en/news/2020/news_0010.html 참조.

3

헤이그 신규 회원국 및 선언사항

□ 멕시코(Mexico) - '20. 6. 6. 발효

○ '20. 3. 6. 가입으로 74번째 헤이그 협정서 회원국이 되었으며, 64 번째 1999년 개정협정국이 되었습니다.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7(2)과 Rule 12(3)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를 부과하며, 1·2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차 수수료는 국제출원 제출 당시 지불하여야 하며, 2차 수수료는 멕시코 관청에서 공지하는 날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Article 11(1)(b)에 따라 공개연기가 불가능합니다.

- Article 13(1)에 따라 디자인의 단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rticle 16(2)에 따라 명시된 기술서나 서류가 관청에 도달될 때까지 소유권 변경 기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Article 17(3)(c)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최장 보호기간(25년)을 부여합니다.

- Rule 18(1)(b)에 따라 가거절 기간을 12달로 연장합니다.

개별지정수수료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1차 수수료	1개의 디자인	116
		추가되는 디자인 당	4
		1개의 디자인 (감면금액)	58
		추가되는 디자인 당 (감면금액)	2
	2차 수수료	일반금액	334
		감면금액	167
갱신	디자인 당		343
	디자인 당(감면금액)		171

☞ 각국의 국내절차는 <https://www.wipo.int/hague/memberprofile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국 변동 사항

□ 브렉시트 협정(Brexit Agreement)에 따른 영향

-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탈퇴 협정은 2020.2.1~12.31일 까지의 전환(transition period)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은 이 전환기간 동안 EU를 지정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에 대해 영국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지속됨을 공지하였습니다.
- 영국은 이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EU에서 디자인등록을 획득한 헤이그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이 전환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디자인의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방안이 통보되는 대로 공지할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wipo.int/hague/en/news/2020/news_0004.html

□ 일본(Japan) - 보호기간과 개별지정수수료 변동('20. 4. 1. 발효)

- '99년 협정 Article 17(3)(c) 및 공통규칙 Rule 28(2)(b) 관련
 - 국내법에 따른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개별지정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을 선언하였습니다.

개별지정수수료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디자인 당	682
첫 번째 갱신	디자인 당	772
두 번째 갱신	디자인 당	772
세 번째 갱신	디자인 당	772
네 번째 갱신	디자인 당	772

□ 이스라엘(Israel) - 개별지정수수료 변동('20. 4. 9. 발효)

○ '99년 협정 공통규칙 Rule 28(2)(b) 관련

- 표준 지정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을 선언하였습니다.

개별지정수수료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디자인 당	113
	디자인당(감면금액)	68
첫 번째 갱신	디자인 당	141
두 번째 갱신	디자인 당	170
세 번째 갱신	디자인 당	198
네 번째 갱신	디자인 당	226

☞ 수수료 변동사항은 <https://www.wipo.int/hague/en/fees/individ-fee.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개별국 상황 - '20.6.11일 기준**

- 아래 목록의 지정계약당사자는 국제사무국에 해당 기간 동안 대민 서비스 업무의 중단 및 재개일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 헤이그 공통규칙 Rule 4(4)에 따라, 해당 기간에 만료된 헤이그 관련 대상 건들은 해당 관청의 업무 재개일의 첫 날에 만료됩니다.

국가	폐쇄기간	변경만료일	업무 재개일 및 지원서비스
몰도바	3. 30 ~ 5. 3	5. 4	• 5. 4일 재개
베트남	3. 30 ~ 5. 4	5. 5	• 5. 5일 재개
스페인	3. 14 ~	-	
슬로베니아	3. 29 ~	-	• 온라인/전화상 서비스 운영 • 비상조치의 연장 여부는 늦어도 7. 1일까지 공지 예정
시리아	4. 16 ~5. 31	6. 1.	• 6. 1일 재개
아제르바이잔	3. 31 ~ 5. 30	5. 31.	• 5. 31일 재개
이탈리아	3. 12 ~	-	• 온라인/전화 서비스 제공 • 2. 23 ~ 5. 15일까지 행정처리가 보류된 건들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통보함
튀니지	3. 22 ~	-	

☞ 코로나19 관련한 업데이트 사항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wipo.int/newsletters-archive/en/hague_notices.html

○ 아래 지정체약당사자는 민원 관련 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습니다.

국가	조치 내용
미국	• 3. 27일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따라, 디자인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한의 연장
아프리카 지식 재산기구(OAPI)	• 5. 18 ~ 5.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건들의 기한일이 7. 15일까지 연장됨

○ 각 지정체약당사자의 공지 내용 및 추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국가	참조 사이트
몰도바	http://www.agepi.gov.md/en 또는 http://agepi.gov.md/en/news/state-agency-intellectual-property-resumes-its-activity-monday-may-4-2020 를
이탈리아	https://uibm.mise.gov.it/index.php/en/
튀니지	http://www.innorpi.tn/
베트남	http://www.noip.gov.vn/en/web/english/home
스페인	https://www.oepm.es/es/index.html
아제르바이잔	http://copat.gov.az/
미국	https://www.uspto.gov/ 또는 https://www.uspto.gov/coronavirus
슬로베니아	http://www.uil-sipo.si/uil/ 또는 http://www.uil-sipo.si/uil/urad/o-uradu/novice/elektronske-novice/clanki/poslovanje-urada-v-casu-ukrepov-proti-siritvi-covid-19/
시리아	http://www.dcip.gov.sy/ 참조, 또는 intreg@dcip.gov.sy 로 연락
아프리카 지식 재산기구(OAPI)	http://www.oapi.int/index.php/fr/ 또는 http://www.oapi.int/index.php/fr/component/k2/item/536-les-delaais-de-procedures-proroges-jusqu-au-15-juillet-2020

5

국제사무국 하자통지 사례

□ 수수료와 관련된 하자통지

- 수수료 납부확인이 지연될 경우, 국제등록의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이 중 최근에는 HAGUE 출원이라는 표시가 없었던 이유로 MADRID 출원 건의 수수료로 잘못 할당되었다가 이후 HAGUE 출원으로 다시 수정되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국제출원서상 수수료정보를 기재하실 때, HAGUE_(고유번호)로 쓰셔야 국제사무국에서 해당 건이 HAGUE 출원관련 수수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단 납부예정 일자와 실제 납부일자의 차이는 하자통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 미납으로 인한 수수료 하자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하자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고유번호로 E-Payment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용지 기재 (예시)>

PAYMENT OF FEES

<input type="checkbox"/> The applicant has requested a deferment in publication (item 17(ii)) and wishes to pay the publication fees at a later date but not later than three weeks before the period of deferment expires.			
1. INSTRUCTION TO DEBIT FROM A WIPO CURRENT ACCOUNT (if this box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 2 below)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WIPO current account: Holder of the account: Account number: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2. METHOD OF PAYMENT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Patent Agency.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ft/BIC: CRESCHZZ80A	<input checked="" type="checkbo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border: 1px solid black;"> Payment identification HAGUE-KR20200000030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right;"> dd/mm/yyyy 14/03/2020 </td> </tr> </table>	Payment identification HAGUE-KR20200000030	dd/mm/yyyy 14/03/2020
Payment identification HAGUE-KR20200000030	dd/mm/yyyy 14/03/2020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input type="checkbo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Payment identification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right;"> dd/mm/yyyy </td> </tr> </table>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Payment made to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put type="checkbox"/>		
GRAND TOTAL IN SWISS FRANCS 2,049CHF (see note 6 on cover page or use the fee calculation sheet attached herewith)			

6

헤이그 시스템 계약당사자 현황

□ 헤이그협정 가입 계약당사자 현황

- 2020. 6월 말 현재, 헤이그 협정 가입국은 74개,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계약당사자는 64개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L	알바니아(Alban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C	모나코(Monaco)
BE	벨기에(Belgium)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G	불가리아(Bulgaria)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K	마케도니아
BW	보츠와나(Botswana)	MN	몽골(Mongolia)
BZ	벨리즈(Belize)	MX	멕시코(Mexico)
CA	캐나다(Canada)	NA	나미비아(Namibia)
CH	스위스(Switzerland)	NL	네덜란드(Netherlands)
DE	독일(Germany)	NO	노르웨이(Norway)
DK	덴마크(Denmark)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EE	에스토니아(Estonia)	OM	오만(Oman)
EG	이집트(Egypt)	PL	폴란드(Poland)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O	루마니아(Romania)
ES	스페인(Spain)	RS	세르비아(Serbia)
FI	핀란드(Finland)	RU	러시아(Russia)
FR	프랑스(France)	RW	르완다(Rwanda)
GB	영국(United Kingdom)	SM	산마리노(San Marino)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HR	크로아티아(Croati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HU	헝가리(Hungary)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IL	이스라엘(Israel)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S	아이슬란드(Iceland)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JP	일본(Japan)	TN	튀니지(Tunisi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TR	터키(Turkey)
KH	캄보디아(Cambodia)	UA	우크라이나(Ukraine)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VN	베트남(Viet Nam)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WS	사모아(Samoa)

- 유럽연합(EM),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지정은 각 28개, 17개 국가를 포함